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4. 8 선고 2021가단2213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전용우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주형

변 론 종 결 2022. 3. 4.

판 결 선 고 2022. 4. 8.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2020. 2. 10.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은 47,847,12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847,1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76507 양수금 사건에서, 2017.

11. 14.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89,117,807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07. 11.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D은 2018. 3. 7. E을 상대로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18가합288 손해배상(기)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2019. 5. 30.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이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E은 위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2억 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 주문: 피고(E)는 원고(D)에게 898,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원고는 서귀포시 F 전 6,5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9. 29. 피고 앞으로 2001. 9.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담보목적의 소유권

이전등기(피담보채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200만 원의 차용금채무)인데, 피고가

가등기담보법에 정해진 청산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담보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부

동산의 소유권을 G에게 이전함으로써,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2020. 1. 15.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의 E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20타채20301,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E이 관련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나76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법원은 2020. 1. 29. 1심의 주요 판단 이유를 유지하면서 '제1심 판결 중 피고(E)에 대하여 원고(D)에게 893,031,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20.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이에 대한 상고(대법원 2020다17757)가 2020. 7. 9.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D은 2020. 2. 10. 조카 사위인 피고에게 11억 30,457,18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위 각서에 기한 채무변제계약을 '이 사건 변제계약'이라 한다). D은 이 사건 변제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이 사건 지불각서〉

D이 2001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빌렸고 위 부동산의 명의 를 E에게 대여하던 오던 중 관련 사건에서 승소하여 피고에게 2020. 2. 10.까지 원 리금 11억 30,457,180원을 변제하되 변제 방법은 피고가 D을 채무자로, E을 제3채 무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추심하여 변제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변제계약에 기하여 D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20차293 각서금 사건으로 11억 30,457,180원의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4. 3. 채무자를 D으로, 제3채무자를 E으로 하여 관련 사건의 항소심 판결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20타채1483)을 받았다.

사. 원고는 2020. 10. 12.경 이 사건 공탁금 2억 원 중 177,638,837원1)을 회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D에 대한 위 채권의 잔존 원금은 2020. 10. 12. 기준 37,840,61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4,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3. 4. 현재 잔존 원금 37,840,613원 이에 대하여 이자가 최종적으로 변제된 다음날인 2020. 10. 1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3. 4.까지 약정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006,509원의 합계 47,847,12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이 사건 변제계약은 허위의 채권에 기한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 2001년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자 명의를 D으로 남겨 놓은 상태였는데, D이 임의로 E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는 등으로 처분하여 피고는 D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는 D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D 명의로 E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진행한 결과 D이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갖게 되었는데, D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 판결금채권을 피고가 추심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변제계약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해의사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 변제가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는 2001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D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명의만으로 D 앞으로 남겨두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다 D은 관련 사건에서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자신이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 피고가 2001년경부터 관련 사건이 제기되기 이전까지 D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D이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를 설정하였을 무렵 D에 대하여 어떠한 항의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드러나지 않은 점, 따라서 피고가 D에 대해 어떠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변제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변제계약의 내용, 피고와 D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제계약은 무자력 상태인 D이 피고와 통모하여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변제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변제계약은 원고의 앞서 본 피보전채권액인 47,847,12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7,847,1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희경

1) 당초 원고는 E의 공탁금 2억 원 및 그 이자를 추심하였다가, E으로부터 원고의 압류는 피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경합하므로, 원고의 안분액을 제외한 나머지 22,897,291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E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 최종적으로는 177,638,837원만을 회수하였다.